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6931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구자희, 김도년, 이명희, 정공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9. 15.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31.부터 202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에 관한 설계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2023고약21416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2024. 2. 15. 위 법원에서 '피고는 2023. 4. 19. D 사무실 내 컴퓨터에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2023. 6. 28.부터 2023. 7. 31.까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4. 3. 7.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 내용과 같이 피고가 2023. 4. 19.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 동의 없이 설치하였고, 2023. 6. 28.부터 2023. 7. 31.까지 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 상당의 금액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10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품가격은 171,211,240원이다. 원고의 손해액은 위 정품사용료인 171,211,240원인데, 그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써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도 모듈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듈이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대부분의 모듈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크랙 버전에 포함된 많은 모듈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하위 모듈 전부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특정한 하위 모듈의 정가 합계액인 171,211,24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업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횟수나 기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의 사용료 및 2022년 실제 사용 사용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초 설치일인 2023.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2

같은 손해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7. 3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